

1964 민권법의 TITLE VI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민족, 인종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다”

LATA(Livemore Amador Transit Authority)는 누구라도 민족, 인종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의 이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4 민권법의 Title VI ("Title VI"로 개정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Title VI 에 의거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LAVTA 에 서면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Title VI 제소 신청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Title VI Coordinator
Livemore Amador Valley Transit Authority
1362 Rutan Court, Suite 100
Livemore, CA 94551

구두로 제소할 경우, Title VI 에서 녹취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두 제소를 신청하거나 LAVTA 의 Title VI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925 455-7500 로 전화해서 Title VI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Livemore Amador Valley Transit Authority (LAVTA)

Title VI 제소 절차

LAVTA (Livemore Amador Valley Transit Authority)의 방침은 모든 시민들이 교통 서비스를 차별없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1964 민권법의 Title VI와 관련하여 LAVTA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점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평등권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itle VI 은 무엇인가요?

Title VI 는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민족, 인종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1964 민권법의 조항입니다. Title VI는 성적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시민 평등권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소할 수 있나요?

민족,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LATA (Livermore Amador Transit Authority, 이하 '당국') 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Title VI 제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불만 양식

제소 방법

Title VI 제소 신청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Title VI Coordinator
Livermore Amador Valley Transit Authority
1362 Rutan Court, Suite 100
Livermore, CA 94551

구두로 제소할 경우, Title VI 에서 녹취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두 제소를 신청하려면, Title VI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Tel. 925 455-7500).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국에서 검토한 후 사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국에서 제소 사안을 검토하게 될지에 관한 확인 편지가 고소인에게 발송됩니다.

조사

접수된 제소에 대해 당국의 실무 부서를 조사하게 됩니다. 당국과 무관한 독립적인 제소 조정자가 제안하는 중재안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변호사 또는 자신이 선정한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조사 중에 증인을 출석시키고 증언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제소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당국은 고소인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배정된 조사관에게 요청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이 조사관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5 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당국은 행정 권한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 권한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접수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 제소 중재인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고소인은 60 일 이내에 이사회 의 최종 결정에 관한 진술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에게는 사건 종결에 관한 편지 또는 심의 결과에 관한 편지 (LOF) 중 하나가 발송됩니다. 종결에 관한 편지는 조사 항목들을 요약하고 해당 사건이 Title VI 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통보합니다. LOF 는 신고된 사안에 관한 모든 조사 항목 및 인터뷰를 요약하고, 징계 처분, 직원 교육 또는 기타 조치가 있을지 여부에 관해 설명합니다. 고소인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소하면 됩니다.

연방교통국 (FTA) 에 직접 제소하고 싶으면 아래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FTA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